

# 뉴질랜드와 호주의 언론피해구제제도 II

## -2008년 해외시찰 보고서-

조정중재팀 남 승 균

우리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해외 기관을 방문, 기관 현황 및 자료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우리 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언론중재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시찰을 실시하였다.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시찰단은 지난 12월 10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시찰하였으며, 언론유관단체 및 언론사 방문을 통해 두 나라의 언론피해구제제도 및 오보대응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작년 시찰단은 호주 언론평의회, 시드니모닝헤럴드,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뉴질랜드헤럴드를 방문해 두 나라의 신문 관련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짧은 일정으로 방송 관련 언론피해구제 기관은 방문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두 나라에 대한 방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시찰단은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방송 관련 언론피해구제 기관인 뉴질랜드의 BSA와 호주의 ACMA를 방문하였으며, 이와 함께 호주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The Australian를 찾았다.

이번 방문으로 인해 신문과 방송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로 나뉘어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피해구제 시스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두 나라의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었다. 특히 BSA는 우리 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이번 시찰의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시찰보고서에서는 BSA를 중심으로 하여 이번 방문처의 특성과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1. BSA(Broadcasting Standards Authority)

방송법(Broadcasting Act)에 의해 설립된 BSA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의 방송위원회는 정책수립 및 규제 등 행정의 역할이 우선시되고 피해구제업무는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BSA는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이번 면담에서는 BSA의 사무국장

(Chief Executive) Dominic Sheehan과 법률담당 Christina Sophocleus를 만나보았다.

#### 가. BSA의 조직과 업무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한 공정방송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BSA는 공정한 결정을 통해 뉴질랜드 방송의 공정성과 자유를 증진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9년 설립된 법정기관이다.



BSA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sup>1)</sup>이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준사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SA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분되며, 위원회는 'Board 4'라고 불리는 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4명의 위원은 방송장관의 추천으로 총독에 의해 임명되며, 이 중 2명의 위원은 각각 방송계와 공익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되고 의장은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에 있는 자를 선출한다. 이들 'Board 4'는 BSA에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지니며, 9인의 사무처 직원들이 불만 접수 및 안건 상정 등을 담당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위원들은 비상근이며 웰링턴에 있는 사무실에는 사무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당사자를 직접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BSA가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므로 웰링턴 1개소 이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BSA는 법정 사업으로서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담당하며, 방송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 나. BSA의 불만처리 시스템

BSA에서 다루는 영역은 방송에 한정되어 있지만 대상 프로그램의 범위는 무척 광범위하다. 방송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주로 뉴스나 시사보도 등을

다루고 있지만, BSA는 TV나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sup>2)</sup>, 방송실천요강(Code of Broadcasting Practice)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민원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실천요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방송채널·프로그램명·방송 일시 등을 기재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방송실천요강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프로그램이 방송된 날로부터 20 영업일<sup>3)</sup> 이내에 먼저 서면으로 해당 방송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서면을 통해 불만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식 민원(Formal Complaint)'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공식 민원으로 접수된다.

다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BSA의 법률 담당 매니저에게 직접 신청서를 보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BSA 웹사이트에 마련된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에 대해 방송사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원인이 방송사의 답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은 그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이 문제를 BSA로 회부시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사가 20 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일로부터 60 영업일 이내에 이 문제를 BSA로 회부시킬 수 있다.

일단 BSA로 민원이 회부되면 BSA는 해당 방송사

1) 사무국장인 Dominic Sheehan은 기관의 성격을 'Independent Crown Agency'라고 표현했다.  
 2) 상업광고에 대한 민원은 광고기준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정치광고에 대해서는 BS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3) 주말, 공휴일, 연말연시 기간(성탄절부터 1월 15일까지)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20 영업일은 한 달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로부터 6개월 이내, 보도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한 우리 제도에 비해 BSA가 규정하고 있는 신청 기간은 상당히 짧다고 할 수 있다.

에 민원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그 회부서 사본을 송부한 후 답변을 의뢰하고 민원을 의뢰한 당사자에게 방송사의 답변서 사본을 송부한다. 방송사가 BSA에 추가 의견을 진술하면 당사자는 이에 대해 최종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BSA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방송사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BSA의 위원 4인이 심의 후 결정을 내린다. BSA 결정은 당사자와 방송사에게 송부됨은 물론 BSA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 다. 방송실천요강(Code of Broadcasting Practice)

방송실천요강은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독특한 제도 중 하나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를 호주의 ACMA에서도 볼 수 있었다.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면 방송의 내용이 네 가지 방송실천요강에 어긋났는지

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중파TV(Free-to-air television)
- 유료TV(Pay television)
- 라디오방송(Radio)
- 선거방송(Election Programmes)

각각의 코드는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담은 기준(Standards)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준은 다시 기준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일련의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구성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중파 TV<sup>4)</sup>의 경우를 살펴보면 품위(Good Taste and Decency), 법과 사회질서(Law and Order),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균형(Balance), 정확성(Accuracy), 공정성(Fairness), 프로그램 등급 분류(Programme Classification), 프로그램 정보(Programme Information), 어린이 보호(Children's Interest)<sup>5)</sup>, 폭력(Violence), 주류 홍보(Liquor) 등 11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유료TV나 라디오방송의 기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6)</sup>.

〈방송실천요강(Codes of Broadcasting Practice) 및 기준(Standards)〉

방송실천요강	공중파TV		유료TV		라디오방송	
기 준	1. 품위	7. 프로그램 등급분류	1. 등급 분류	7. 공정성	1. 품위	7. 차별 금지
	2. 법과 사회질서	8. 프로그램 정보	2. 품위	8. 정확성	2. 법과 사회질서	8. 책임 편성
	3. 개인 프라이버시	9. 어린이 보호	3. 어린이 보호	9. 개인 프라이버시	3. 개인 프라이버시	9. 주류홍보
	4. 균형	10. 폭력	4. 폭력	10. 주류 홍보	4. 관점	
	5. 정확성	11. 주류 홍보	5. 법과 사회질서		5. 정확성	
	6. 공정성		6. 균형		6. 공정성	

4) TV One, TV2, TV3, C4, Prime, Maori Television 등이 이에 해당됨.

5)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6) 선거방송의 경우 위 세 가지의 기준 이외에도 선거방송 시 사실과 의견의 분리(Distinguishing Factual Information from Opinion or Advocacy), 명예훼손 금지(Denigration), 편파방송 금지(Misleading Programmes), 정치적 정체성의 표시(Opening and Closing Address)를 추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 이 네 가지 기준은 총선 관련 방송에만 적용되며 지방자치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실천요강은 필요할 경우 5년에 한 번 개정<sup>7)</sup>되며, 방송사업자들은 BSA와 상담을 거친 후 방송 기준을 정비하며 공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고 있다.

### 라. BSA의 결정력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BSA는 방송사로 하여금 정정의 내용이나 결정 요약서를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5,000NZ\$의 한도 내에서 정부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사는 5,000NZ\$ 이내의 비용 또는 보상금 이외에도 별도의 법정비용을 부과받아 5,000NZ\$ 이상의 비용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BSA는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결정 내용의 공표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위배사안일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최고 24시간 동안 방송이나 광고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BSA의 결정에 대해 BSA 내부절차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데, 방송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신청인은 항소의

상대방이 되지만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 마. 총 평

2008년의 경우 BSA에는 139건의 불만 처리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BSA가 결정을 내린 사안은 19건이며, 이 중 실질적으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례는 11건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해구제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와는 다르게 명예훼손 사례의 연간 변동폭이 작은 뉴질랜드의 경우 BSA를 통한 피해구제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BSA 방문〉

7) 각 방송실천요강의 최근 개정일시는 다음과 같다.

- 공중파TV : 2004. 12. 1.
- 유료TV : 2006. 8. 1.
- 라디오방송 : 2008. 7. 1.
- 선거방송 : 2008. 6. 1.

〈BSA의 연간 불만처리건수〉

구 분	접수처리된 민원	심의 사안
July 2007 - June 2008	148	139
July 2006 - June 2007	131	125
July 2005 - June 2006	153	156
July 2004 - June 2005	184	214
July 2003 - June 2004	196	203
July 2002 - June 2003	169	182
July 2001 - June 2002	186	259
July 2000 - June 2001	197	189
July 1999 - June 2000	206	239
July 1998 - June 1999	204	184
July 1997 - June 1998	174	177
July 1996 - June 1997	206	199
July 1995 - June 1996	179	171
July 1994 - June 1995	162	144
July 1993 - June 1994	168	151
July 1992 - June 1993	159	144
July 1991 - June 1992	106	76
July 1990 - June 1991	52	45

BSA에 접수되는 불만처리건수는 최근 4년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08년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또 다른 미디어 불만처리기관인 광고심의위원회(ASA :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역시 유사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BSA나 ASA에 대한 인지도나 대중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BSA가 결정한 139건의 사례를 보면 TV프로그램이 82%(11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BSA에 접수되는 사건은 과거에 비해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방송 기준 위배로 접수되는 사건들은 여러 복합적인 위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하였

으나 이것이 명백히 사실과 어긋났을 때에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정확성과 균형이라는 방송기준에 위배된 보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언론평의회(NZPC : New Zealand Press Council)에서는 BSA의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문에 대한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NZPC의 경우에도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공방을 거친 후에 곧바로 결정에 회부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있는 협상과 조정 등에 의한 절차는 없으며, 실제 심리가 열리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반드시 단점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NZPC와 BSA의 결정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뉴질랜드 국민들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 역시 방송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BSA에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BSA의 면담자들은 5,000NZ\$로 한정되어 있는 배상금의 한도 폐지 및 타 피해구제기관이나 행정기관과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고, 언론중재제도와 한국의 인터넷 언론의 현황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졌다. 면담을 마친 후-적어도 방송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한- 언론중재위원회와 BSA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이번 시찰에서 얻은 가장 귀한 수확이며, 이번 시찰이 일회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서로 장기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다.

8) 양재규, 「해외시찰보고서」, 〈언론중재〉, 2007년 겨울호 : p.125. NZPC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보고서를 참조할 것.



## 2.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는 지난 2005년 7월 호주의 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커뮤니케이션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 Authority)가 통합되면서 설립된 연방정부기구이다.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 컨버전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번 면담은 ACMA의 시드니 사무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부서의 담당자 Rochelle Zumamer를 비롯한 실무진 3명이 질문에 답해 주었다.

### 가. ACMA의 조직과 업무

ACMA는 호주방송위원회와 호주통신위원회가 결합된 방송통신규제기관으로 TV, 라디오, 인터넷, 통신에 대하여 규율하는 정부기구로서 업계의 자율규제와 경쟁을 증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통신 · 방송 · 무선통신 · 온라인 콘텐츠 분야의 규제
- 방송사업자의 인 · 허가 및 주파수 할당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상의 문제점과 스팸 등 불만 접수 처리
- 방송내용의 불만사항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

ACMA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중재위원회와 유사성이 있는 것은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항목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BSA와 프로세스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다.

ACMA 역시 BSA와 마찬가지로 TV · 라디오 등에 대해 방송실천요강(Code of Practice)를 정해 놓고 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해당 방송국에 직접 불만사항을 제기하여 60일 이내에 불만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방송국의 반응에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TV자막 · 답배광고 · 정치광고 · 선거자료 · 의약품 광고 · 아동 방송기준 · 호주 콘텐츠 기준 · 상업라디오 기준 · 반테러 기준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위원회에 직접 제기할 수 있으나,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과 선택 · 방송일정 · 광고내용 ·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불만사항은 위원회가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중재제도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라면 ACMA에서는 명예훼손에 의한 신청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ACMA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로 인해 누군가 초상권이 침해되어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호주에서는 이를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 Act)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ACMA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 나. 호주의 사생활보호법과 ACMA가 규정하는 공익의 범주

ACMA의 관계자가 언급한 대로 호주의 방송법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방송사는 방송법에 의거해 ACMA와 협의하여 방송실천요강(Code of Practice)을 제정한 후 ACMA

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방송실천요강의 준수는 방송사업 인가의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지난 1988년 제정된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이다.<sup>9)</sup> 사생활보호법은 언론뿐만 아니라 영리기관 및 정부기관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다룰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언론 면제(Journalism Exemption)'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호주의 정보·국방·안보와 관련된 정부 산하기관만을 예외로 했던 기존의 개인정보공개 예외 범주에 언론을 포함시킨 것이며, 이러한 예외의 대상은 언론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언론 기관을 대신해 뉴스를 보도하는 기관이나 개인이다. 따라서 호주의 방송사는 공익과 관련된 경우 개인 정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칫 애매할 수 있는 '공익'이라는 개념에 대해 ACMA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 유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의 예로 다음과 같은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형사상의 범죄
- 공중의 보건 및 안전에 관련된 문제
- 소비자 문제 및 소비자 보호 차원
- 정치, 정부, 행정상의 문제
- 기업, 비즈니스, 노조 등이 행하는 조직상의 행위
-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

#### 다. 총 평

면담에 응한 조사팀의 직원들은 ACMA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 방송에 대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혹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방송국의 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행정적 절차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ACMA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보다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호주의 명예훼손법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 3. The Australian

1964년 캔버라에서 호주 최초의 전국 일간신문으로 창간된 The Australian지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보도를 통해 호주의 유력 일간지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는 독자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호주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간신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자불만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말판 편집장 Nick Cater는 영국 BBC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상과 한국-호주간 통상 관계에 관심이 많은 지한파 인사이기도 했다.

#### 가. 호주 언론계의 동향과 The Australian지의 특징

호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과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종의 전국 일간지가 발행되며, 그 외 10개의 지방 일간지가 있다. 멜버른에서 발행되는 헤럴드 선(Herald Sun)이 56만부로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

9) 호주의 사생활보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호주의 언론과 사생활 보호」(곽기성 저, <언론법제>, 2008년 하권)의 내용을 참조·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하며, 시드니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가 43만부로 2위의 발행부수를 나타낸다.

호주 일간지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인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뉴스 코퍼레이션사(The News Corporation Ltd.)와 페어팩스(Fairfax)사 등 소수 신문그룹에 의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안,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의 신문과 채널7(CH7) 등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뉴스 코퍼레이션사의 뉴스 리미티드 그룹은 호주 일간지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1980~1990년대에는 석간 전문지를 포함하여 대도시 신문들이 연속적으로 폐간되었는데,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폐간되는 석간신문들이 주간신문인 오스트레일리안과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 흡수되어 심야 특별판으로 바뀌기도 했다.<sup>10)</sup>

오스트레일리안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와 함께 2대 전국 일간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와 디 에이지(The Age)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이다.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안은 루퍼트 머독 소유의 뉴스 리미티드에 속해 있으며, 판매부수는 15만부이다.

#### 나. 오스트레일리안의 독자불만처리 방법

오스트레일리안은 독자불만처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다만 독자로부터

터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법적문제가 아니라 오보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편집부에서 이를 접수해서 정정 여부를 결정하지만, 불만사항이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적문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안에 소속된 3명의 변호사가 이를 담당한다고 한다.

만일 보도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바로 정정보도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면에 별도로 마련된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the Editor)' 라는 섹션을 통해 기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종의 반론보도라고 볼 수 있는데, 독자들 중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배석했던 시드니 총영사관의 김영수 영사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오스트레일리안이 한국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진에는 북한의 인공기를 내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영사관에서 항의를 했고, 다음날 오스트레일리안의 정정



〈The Australian 방문〉

10) 유일상, 「호주의 언론기업소유 집중과 규제」, 세계언론법제동향 (2001년 상권), p8

보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사과보도가 나갔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안타깝게도 Nick Cater가 자료를 찾아주지는 못했다.

독자의 불만이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무팀으로 이관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도 6건 정도 있다고 한다. Nick Cater는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1년에 2-3건 정도에 불과하며,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보도(Fair)와 정확한 보도(Accuracy)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호주 신문평의회(APC : Australian Press Council)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냐는 의견을 물었다. APC는 일종의 자율기구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편집권 독립 헌장(Editorial Charter)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며 회원사들은 APC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APC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편집국장 Sam North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의 Nick Cater도 APC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한 언론사의 자정노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호주의 언론이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감명 깊은 일이었지만, 이는 제도적인 면에 기인하기도 한다. 호주의 명예훼손법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든 가급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료에 근거한 사실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면이 없지 않다.

#### 다. 호주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05년 개정된 명예훼손법은 신문기사, 사진, 광고 및 그림 등에서 특정인을 근거 없이 지적하거나 음해를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에 관한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입증인데, 자신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될 당시에 증거가 없더라도 차후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서 어떤 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거나 차후에 약점이 밝혀질 소지가 있는 보도의 경우에는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물론 호주 사회의 성숙도나 언론의 태도를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명예훼손을 법으로 다루게 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언론중재제도와 같은 전치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음이 입증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보상이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보상(Aggravated damages)을 명하거나 가해자에게 일종의 벌과금(Punitive damages)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시드니가 위치한 NSW주에서는 Punitive damages 제도는 없어졌다고 한다.

#### 4. 시찰을 마치며

이번 시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 중 하나는 해외 인터넷 언론의 현황이었으나, 호주나 뉴질랜드



드는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인터넷 언론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뉴질랜드나 호주는 브로드밴드 보급률로만 따지면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뉴질랜드의 경우 대부분이 아직도 전화 모뎀방식의 구형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뉴스서비스는 조만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뉴질랜드의 경우 2000~2005년 사이에 인터넷 사용자가 285.5%나 증가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인구의 76.3%인 32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뉴질랜드 정부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독점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는 넓은 국토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터넷 인프라가 수준급으로 구축되어 있다. 호주 역시 전국적으로 인터넷 이용 인구는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호주 2,080만 인구 중 68.4%인 1,42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0~05년간 115%의 증가세를 보였다.<sup>11)</sup>

그러나 인터넷 포털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우리의 사정과는 달리, 아직까지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는 포털뉴스나 인터넷뉴스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BSA의 경우도 인터넷에서 문제가 된 보도는 대부분 방송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을 별도로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인터넷 기술의 발달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인터넷 언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물어오기도 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CMA를 설립, 인터넷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작년 시찰보고서에서 언급한 APC 보고서에서도 신문사들이 빠른 속도로 멀티미디어 회사로 전환하고 있음을 언론계의 주요 경향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인터넷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날이 올 것이라 본다.

그때는 아마 BSA나 ACMA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2008년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Percentage of household with access to the Internet)은 무려 94%에 이른다. 부동의 세계 1위이다. 인터넷 언론에 관한 한,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실험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루는 인터넷 언론과 관련한 분쟁은 늘 세계 최신의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찰을 통해 앞으로 인터넷 언론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감했으며, 우리 제도의 우수성과 효율성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더불어 앞으로는 해외시찰의 개념이 외국의 사례를 배우오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11) Internet World Stats상의 통계자료 인용.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p/nz.htm>,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p/au.htm>)